



---

##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

---

의안번호

제15호

#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종욱 의원 등 6명
제출연월일	2026. 2. 9.

#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5호
----------	------

발의연월일: 2026. 2. 9.

대표발의자: 김종욱

공동발의자: 민병춘, 서승필,  
홍태의, 이태모,  
허명숙

## 1. 제안이유

논산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4조

나.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조례안예고: 2026. 2. 9. ~ 2. 14. (5일간)

## □ 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예술인”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 등 6명



제4조(사업과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② (생략)

<신설>

제4조(사업과 보조금 지원)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 제7조 (생략)

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 「지역문화진흥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8.>